

광주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가단34507 판결 [부동산압류등기말소등기]

전 문

원고학교법인 비인학원

피고광주광역시

변론 종결2017. 3. 28.

판결 선고2017.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03. 9. 24. 접수 제17861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현재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2003. 9. 23.

조세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위 부동산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재산이므로, 위 압류등기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살피건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교육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미개교 법인으로 2004. 7. 23. 사립학교법 제47조에 의해 해산명령을 받은 법인으로 학교를 경영할 수 없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학교 교육에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라는 사실만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사나경선

별지